

『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6월 7일

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

나. 제안이유

농산물안전분석실 신규 개소에 따라 분석실 운영을 효과적으로
수행하기 위해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
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운영 지원(안 제1조 ~ 제3조)
- 농산물안전분석실 의뢰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
- 분석 결과 통지 및 활용, 광고 등의 정정(안 제6조 ~ 제8조)
-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(안 제9조,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」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구미시에 개소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2019.1.1.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(PLS)에 의거 농산물 안전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 경감 및 출하 전 검사로 농업인 소득 손실의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